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05 발의연월일: 2024. 10. 8.

발 의 자:이철규·고동진·권성동

김민전 • 서일준 • 강승규

주호영 • 박준태 • 김선교

김기현 • 구자근 • 박상웅

나경원 • 조정훈 • 박충권

유상범・조배숙 의원

(17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(이하 "소상공인재난지원"이라 함)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업 중인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후 동의도 없이 과세정보를 수집・활용하였고, 과세정보를 직접 수집・활용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세기본

법」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수집·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,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이를 적시에 원활하게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재정 지원(이하 "소상공인재난지원"이라 한다)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재난지원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1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: 국세청장
 - 가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1항 및 제8항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 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 고한 다음의 정보
 - 1) 상호, 대표자(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)의 성명 ·주민등록번호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포함한다)·휴 대전화번호, 사업장 소재지·전화번호

- 2) 개업일, 주업종, 부업종
- 3) 폐업일, 폐업 신고일, 휴업 시작일 · 종료일, 휴업 신고일
- 나.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 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
 - 1) 법인명, 대표자(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)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」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포함한다)· 휴대전화번호, 사업장 소재지·전화번호, 법인등록번호
 - 2) 사업 개시일, 주업종, 부업종
 - 3) 폐업일, 폐업 신고일, 휴업 시작일 · 종료일, 휴업 신고일
- 다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라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8조, 제49조 및 제67조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78조에 따라 해당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
 - 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
 - 1) 반기 매출액: 일반과세자
 - 2) 연간 매출액: 간이과세자
 - 3) 연간 수입금액: 면세사업자
- 마. 다음에 따라 전송 · 제출받은 정보
 - 1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

- 2) 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
- 3)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
- 4) 「부가가치세법」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 액
- 5) 「소득세법」 제163조제1항 후단 및 「법인세법」 제121조제 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
-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: 지방자치단체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
 - 가. 조치의 대상 여부, 내용, 이행 기간 나. 조치의 위반 여부, 내용, 위반 기간
- 3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: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지방자치단체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의 장, 법인·단체의 장, 개인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 지원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1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등) ①
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
	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정 지
	원(이하 "소상공인재난지원"이
	라 한다)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
	한 경우 소상공인재난지원의 대
	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
	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
	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
	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
	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
	에 따라야 한다.
	<u>1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</u>
	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
	<u>각 목의 정보: 국세청장</u>
	가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
	제1항 및 제8항 또는 「소
	득세법」 제168조제1항에
	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
	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
	한 다음의 정보
	1) 상호, 대표자(공동대표
	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
	말한다)의 성명·주민등

록번호(「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5제 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포함한다) · 휴대전화번 호, 사업장 소재지 · 전화 번호

- 2) 개업일, 주업종, 부업종
- 3) 폐업일, 폐업 신고일, 휴 업 시작일·종료일, 휴업 신고일
- 나.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제1

 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

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

 신고한 다음의 정보
 - 1) 법인명, 대표자(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)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」 제23조의5제 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포함한다)·휴대전화번호, 사업장 소재지·전화번호, 법인등록번호
 - 2) 사업 개시일, 주업종, 부

업종

- 3) 폐업일, 폐업 신고일, 휴 업 시작일·종료일, 휴업 신고일
- 다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 제7항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 여한 사업자등록번호
- 라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8 조, 제49조 및 제67조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78조에 따 라 해당 구분에 따른 사업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
 - 1) 반기 매출액: 일반과세 자
 - 2) 연간 매출액: 간이과세<u>자</u>
 - 3) 연간 수입금액: 면세사

 업자
- <u>마. 다음에 따라 전송·제출</u> <u>받은 정보</u>
 - 1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

결제금액

- 2)
 「과세자료의 제출 및

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

 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

 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

 신용카드 결제금액
- 3)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 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 서 발급액
- 4) 「부가가치세법」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전자지급거래액
- 5) 「소득세법」 제163조제
 1항 후단 및 「법인세
 법」 제121조제1항 후단
 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
 액
-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보 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: 지방 자치단체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
 - <u>가. 조치의 대상 여부, 내용,</u> <u>이행 기간</u>
 - 나. 조치의 위반 여부, 내용,

위반 기간

- 3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지방자치단체(그소속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지방자치단체(그소속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의장,법인・단체의장,개인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 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 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 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

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처리를 위 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 된 정보로 한정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지원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